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1978. 3. 1 제정

2014. 4. 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 및 편입학

제 2 조 (학부 · 학과 · 전공 및 입학정원) 학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대학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과 학생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 (편입학) ①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을 인정할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편입학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허용한다. (개정 1998.1.5)

③학칙 제15조 제1항에 의한 편입학은 제2학년과 제3학년에 허용한다.

④편입학 전형의 방법,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모집할 때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 3 장 학부 입학생의 전공 결정

제 4 조 (전공 결정시기) ①학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결정시기는 제1학년말 또는 제2학년말 중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5)

②학부별로 편입학한 학생은 입학시 전공을 결정한다.

③학과별로 입학한 후에 전공을 결정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전공의 결정절차) ①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이 전공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공결정 승인신청서를 지도교수, 교학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부별로 편입학한 학생은 전공결정 승인신청서를 해당대학 교학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전공의 결정을 승인한다.

1. 신청학생의 희망
2. 학교의 시설과 자원
3. 사회의 필요
4. 재학중 이수교과목과 성적 (개정 1997.3.7)
5.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조건
6. 기타 전공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교과과정

제 6 조 (교양과목의 구성) ①학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양과목은 기초교양과목, 핵심교양과목, 일반교양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2.23)

②핵심교양과목은 ‘문학과언어’, ‘표현과예술’, ‘역사와철학’, ‘인간과사회’, ‘과학과기술’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31.)

제 7 조 (전공과목, 전공기초과목, 대학기초과목 및 교양과목 취득학점) ①전공과목, 전공기초과목, 대학기초과목 및 교양과목의 졸업이수학점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 학부 학생의 전공과목, 전공기초과목, 대학기초과목 및 교양과목의 졸업이수학점은 제1전공의 전공과목, 전공기초과목, 대학기초과목 및 교양과목의 졸업이수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3.2.25.)

②(삭제 2012.2.29)

제 8 조 (교양과목의 학점취득) ①기초교양과목의 학점취득은 인문 및 사회계열의 학생은 ‘우리말과글쓰기’, ‘대학영어’, ‘고급영어’, ‘기독교와 세계’, ‘나눔리더십’, ‘고전읽기와 글쓰기’, ‘제2외국어 I’, ‘제2외국어 II’의 8과목(20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자연 및 예체능계열의 학생은 ‘우리말과글쓰기’, ‘대학영어’, ‘기독교와 세계’, ‘나눔리더십’, ‘고전읽기와글쓰기’의 5과목과 ‘고급영어’와 ‘제2외국어(I 과 II)’ 중에서 택일하여 6과목(16학점)(단, 제2외국어(I 과 II) 선택 시 7과목(17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대학 및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학생의 기초교양과목 이수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②(삭제 1998.1.5)

③(삭제 2000.2.1)

④(삭제 2000.2.1)

⑤(삭제 1998.1.5.)

⑥본교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의 기초교양과목의 학점취득은 인문 및 사회계열은 ‘우리말과글쓰기’, ‘대학영어’, ‘고급영어’, ‘기독교와 세계’, ‘나눔리더십’, ‘고전읽기와글쓰기’의 6과목(16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자연 및 예체능계열은 ‘우리말과글쓰기’, ‘대학영어’, ‘기독교와세계’, ‘나눔리더십’, ‘고전읽기와글쓰기’의 5과목

(1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0.)

⑦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1전공의 계열에 따라 제1항 또는 제6항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⑧핵심교양과목의 학점 취득은 5개 영역과 5개 역량 중 각 영역별·역량별 1과목(3학점)씩 5과목(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대학 및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과학교육과는 4개 영역별·역량별 1과목(3학점)씩 4과목(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약학대학 학생의 핵심교양과목 학점취득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5)

⑨교양과목 학점 취득과 별개로 입학 당시 ‘기본영어’ 이수부과자는 해당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3)

(개정 2013.11.20)

제 9 조 (과목의 설정과 개설) ①교양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교양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4)

②(삭제 2000.2.1)

③대학기초과목,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해당 학부, 학과 또는 전공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5)

제 10 조 (교과과정의 적용) ①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②입학하여(편입학 제외)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후 복학한 학생은 복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③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한 학년의 일반학생의 입학년도의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약학대학으로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한 학년도의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1.4.15)

④재학중 전과를 하거나 전공을 변경한 학생은 전입된 학과 또는 전공의 교과과정(해당 학생의 입학당시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제 11 조 (교과과정 적용의 특례) ①교과과정 개정에 의해 필수과목이 변경되었거나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 개정 이전 입학생에게도 해당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교과과정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개정된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때에는 이를 개정 교과과정의 해당영역(교양, 전공, 교직 등)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12 조 (편입학한 학생의 교과과정 및 전적학교 취득학점 인정) ①편입학한 학생은 제7조 제1항의 해당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학과 또는 전공의 요청에 따라 이수 학점수를 경감할 수 있다.

②편입학한 학생에게는 학과 또는 전공의 결정에 따라 대학기초과목,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 중 일부를,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것을 인정하거나 본교에서의 이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시 필요한 학점은 모두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③편입학한 학생에게는 총장이 교무처장의 제청에 따라 교양과목과 기타과목학점의 일부를,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본교에서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2.1)

④편입학한 학생은 학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훈련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전적학교에서 훈련학점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교목실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전적학교 학점인정 또는 본교취득면제 및 제4항의 훈련학점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1항 단서의 이수학점 경감, 제2항 및 제3항의 학점인정에도 불구하고 제2학년에 편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총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그리고 제3학년에 편입학한 학생은 총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과로 편입한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모두를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⑦제1항 단서와 제2항의 대학기초과목,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의 경감이수학점수와 전적학교 이수인정 학점의 총수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 교과과정상의 제1학년(제2학년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또는 제1학년 및 제2학년(제3학년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의 기본이수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28)

⑧학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편입학(이하 “학사편입학”이라 한다)한 학생은 한 학기에 21학점까지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 장 전과 및 전공 변경

제 13 조 (전과 시기 등) 학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과에 관한 그 실시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조 (학부 내에서의 전공변경시기) ①학부별로 입학한 후 전공을 결정한 학생이 동일 학부 내에서의 전공을 변경(이하 “전공변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학년말과 제3학년말에 2회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학과별로 입학한 후 전공을 정한 학생이 전공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전과 및 전공변경 허가범위와 절차) ①전과 및 전공변경의 허가대상과 인원은 매 학년도말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3.8)

②(삭제 1999.3.8)

③전과 및 전공변경의 허가기준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3.8)

제 6 장 휴학, 제적 및 유급

제 16 조 (휴학)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은 학칙 제2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 17 조 (삭제 2002.2.14)

제 18 조 (재입학자의 취득학점인정) 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제적 또는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 19 조 (유급) ①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은 학칙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5)

② 학칙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된 학생에 대하여는 낙제한 전공필수과목을 재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후 진급을 인정한다.

제 7 장 부전공, 복수전공 및 심화전공 (개정 2008.2.29)

제 20 조 (부전공 이수절차 및 취득학점) ① 학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제1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전공이수를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장은 제5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부전공 이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2.1)

② 부전공이수의 승인을 얻은 학생이 그 취소를 원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 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2.1)

③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 또는 학과의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중 전공교과목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전공의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교과목이 주전공의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교과목과 동일할 때는 이중 6학점까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

④ 부전공이수 및 취소 신청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2.1)

제 21 조 (복수전공 이수절차) ① 학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학과 또는 전공별로 입학한 학생은 제1학년 제2학기부터, 그리고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은 제2학년 제1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이수를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장은 제5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복수전공이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2.1)

②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과 또는 전공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예과 및 의학과와 기타 법령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0.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각 학과를 제2전공으로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전공이 사범계열 각 학과인 학생 및 비사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한다. 다만, 초등교육과는 제1전공이 사범대학 각 학과인 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0.2.1)

④복수전공이수를 승인받은 학생이 그 취소를 원할 때에는 복수전공취소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2.1)

⑤복수전공 이수 및 취소 신청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2.1)

제 22 조 (복수전공이수자의 취득학점 등) ①복수전공이수자는 제7조의 제2전공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대학기초과목, 전공기초과목과 전공과목의 소요취득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②대학기초과목 및 전공기초과목이 동일한 대학 또는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제1전공에서 이수한 대학기초과목 및 전공기초과목을 복수전공의 대학기초과목 및 전공기초과목으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③제1전공에서 이수한 대학기초과목, 전공기초과목 또는 전공과목이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전공의 일부 대학기초과목, 전공기초과목 또는 전공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9학점까지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④사범대학 사회과교육과, 과학교육과에서 각각 공통사회연계전공, 공통과학연계전공을 복수전공할 경우에는 제2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공통사회연계전공은 15학점까지, 공통과학연계전공은 12학점까지 제1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⑤복수전공 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은 때에는 복수전공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복수전공 학생이 제1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전공의 소요취득학점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이를 복수전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의 2 (심화전공 이수 등) ①학칙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화전공을 두고 있는 학과 또는 전공 소속의 학생은 제1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심화전공을 두고 있지 않는 학과 또는 전공 소속의 학생은 복수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③심화전공 이수 등과 관련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9)

제 8 장 계절학기, 수강신청,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이수 및 학점취득특례

제 23 조 (계절학기의 개설) ①학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학기를 개설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고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계절학기에 개설할 교과목명, 학점, 개설일자, 등록요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24 조 (삭제 1998.1.5)

제 25 조 (계절학기 수강생의 평점)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일반학기의 평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누계평점 산정에는 포함한다.

제 26 조 (교과목 수강신청) ①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다음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종합시간표(또는 조정시간표)에 따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

②(삭제 2000.2.1.)

③수업년한 내에 있거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남아있는 학기에는 최소 1과목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제 27 조 (수강신청의 변경) ①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0.2.1)

②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은 학기개시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의 철회는 중간시험 개시 이전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4)

③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2.1)

④수강신청 변경 또는 철회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2.1)

제 28 조 (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취득학점 제한) 학칙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학점수는 3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5.17)

제 29 조 (재수강) 재수강하고 성적을 취득한 경우는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삭제하고 학적부에 'R'(Repeated Course) 표시와 재수강 학년도와 학기를 기재한다. 재수강으로 삭제된 성적은 취득학점과 평점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 30 조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특례) ①학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개정 2000.2.1)

1.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개정 2001.9.24)

2.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기 직전 학기(계절학기, 해외유학교환학생기간은 제외한다)까지의 평균성적이 3.30 이상인 자 (개정 2004.8.30)

②제1항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8.30)

제 31 조 (삭제 2000.2.1)

제 32 조 (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①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수강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성적을 학적부에 기록하고 수강 교과목명 다음에 "(대학원)"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②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수강신청서에 수강하는 석사학위과정 교과목명을 기재하고, 해당 교과목을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3.8)

③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취득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중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킨 교과목의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전공과목 학점으로 한다. 다만, 이수하는 전공 또는 학과가 지정하지 아니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타과목 학점으로 한다.

제 32 조의 2 (학·석사 연계과정) ①학칙 제4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3.2.25)

1. 제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3.3 이상인 자

②학·석사 연계과정의 선발인원 및 기준, 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또는 전공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5)

③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등록절차,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5)

(본조신설 2001.9.24)

제 32 조의 3 (인증제 과정) ①학칙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제 과정을 운영하는 각 학과 또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인증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인증제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중도에 인증제 과정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

③인증제 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증제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또는 전공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8)

제 33 조 (학점취득의 특례) ①학칙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고한다.

②제1항의 특별시험은 특별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동 위원회는 교무처장·교무처부처장 및 당해 교과목별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1.4.6)

③특별시험 대상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기초과목 중 총장이 정하는 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0.2.1)

④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에 6학점, 총계 12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1999.3.8)

⑤제4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수강 학점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⑥제1항의 공고에는 특별시험의 시행일자 및 방법·수험료·등록요령 등을 포함시

켜야 한다.

⑦(삭제 1999.3.8)

제 9 장 성 적

제 34 조 (성적등급별 분포) 학칙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성적의 등급을 정할 때에는 상대평가를 적용하며, 그 분포를 다음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적등급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A등급	A ⁺	}	35 % 이내
	A ^o		
	A ⁻		
B등급	B ⁺	}	A등급과 B등급의 합 70 % 이내
	B ^o		
	B ⁻		
C등급 이하	C ⁺	}	30 % 이상
	C ^o		
	C ⁻		
	D ⁺		
	D ^o		
	D ⁻		
	F		

제 35 조 (초과취득학점의 처리) 학칙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취득학점을 무효로 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그 교과목을 지정하게 한다. (개정 2012.5.17)

제 36 조 (성적정정) ①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기말 성적을 학적과에 제출한 후에 그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답안지(과제물 또는 기타 참고물)를 첨부한 성적 정정원을 매학기 성적제출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학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6)

②제1항의 성적정정은 사무착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 36 조의 2 (삭제 2014.4.7.)

제 10 장 수료 및 졸업

제 37 조 (조기졸업제) 학칙 제4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기졸업제는 모든 학과에 적용한다. 다만, 재학기간 중 과목 낙제한 학생, 학점포기한 학생,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및 편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2.25)

제 38 조 (학년수료자의 자격인정기준) ①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31.)

②제1항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별지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③스크랜튼학부 학생의 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기준은 제1전공의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본항신설 2009.2.23)

제 39 조 (졸업에 필요한 학점특례) 학칙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과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6.6.28)
 2. 약학대학 157학점 (개정 2011.4.15)
 3. (삭제 2006.6.28)
 4.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140학점 (개정 2004.4.21)
 5. 사범대학(과학교육과 제외) 135학점
 6. (삭제 2009.2.23)
 7. 공과대학(컴퓨터공학과, 건축학전공 제외) 139학점 (개정 2013.2.25)
 - 7의2.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140학점 (신설 2012.12.31.)
 8.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174학점 (개정 2013.2.25)
 9. (삭제 2009.2.23)
 10. (삭제 2009.2.23)
 11. 음악대학 음악학부 135학점 (신설 2009.2.23)
 12. 음악대학 무용과 132학점 (신설 2009.2.23)
 13. 조형예술대학 135학점 (개정 2012.12.31)
 14. 건강과학대학(간호학부 제외) 132학점 (개정 2012.2.29)
 15.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136학점 (개정 2012.2.29)
- (개정 2009.2.23)

제 39 조의 2 (훈련학점) 학칙 제48조 제3항의 훈련학점은 8학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예과의 경우 4학점
2. 학칙 제47조의 3에 의한 조기이수자의 경우에는 등록된 일반학기수와 동일한 수의 학점
3.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편입생의 경우에는 잔여수업연한의 일반학기수와 동일한 수의 학점

4. 약학대학으로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4학점

(개정 2011.4.15)

제 40 조 (우등) ①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과목 낙제없이 3.75이상인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한 학생은 학기우등생으로 인정하고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 다만,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및 제33조에 의하여 특례로 취득한 학점은 우등생 인정학점 산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2.8.5)

②재학기간중 과목 낙제한 일이 없는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점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재학기간 전학년을 통하여 누계 평균성적이 3.75 이상인 학생은 우등졸업생으로 4.0이상인 학생은 최우등졸업생으로 인정하고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 다만,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의학과를 제외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4)

제 11 장 학점등록 및 납입금

제 41 조 (학점등록) ①학칙 제23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납입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08.5.28)

②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학생과 계절학기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비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제 12 장 학생활동

제 42 조 (학생단체의 조직 및 운영) ①학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학과 또는 전공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은 당해 단체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회칙의 제정 및 개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단체이외의 학생단체(동아리를 포함한다)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별로 학생처 또는 당해 대학 교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43 조 (학생단체 등의 지도) ①학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단체 등은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7)

②제1항의 지도위원회는 중앙지도위원회와 각 대학 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8.1.5)

③중앙지도위원회는 교무처장 · 학생처장 · 교목실장 · 학생처부처장 및 대학(원)장 중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간

사는 학생처부처장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이 소속한 대학의 학장, 교학부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④대학지도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학장·교학부장 및 학장이 해당 대학 교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간사는 교학부장이 된다. (개정 1998.1.5)

⑤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소·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주관 기관의 허락을 받은 후 행사개시 48시간전에 학생처 또는 해당 대학의 교학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대학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활동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도 같다.

1. 교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인쇄물·영상자료의 첨부·배포 또는 상영
3. 교외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학생활동의 후원을 요청하거나 시상을 의뢰하는 행위
4. 교외 인사의 학내 초청

(개정 1998.1.5)

⑥학생단체의 모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입후보 당시 총 평균성적이 2.00 이상으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2. 임기 개시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개정 2006.12.11)

제 44 조 (간행물) ①학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언론 출판의 일반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간행물을 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를 거쳐 대학장 또는 학생처장의 지도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

제 13 장 (삭제 2006.1.19)

제 45 조 (삭제 2006.1.19)

부 칙(1978. 3. 1 제정)

-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별표]의 전공과목, 부전공과목 및 교양과목의 소요취득학점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197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79. 11. 20 개정)

-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의 전공·부전공·복수전공의 선택시기에 관한 규정과 [별표]의 전공과목 소요취득학점수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1979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81. 6. 17 개정)

이 세칙은 198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8. 20 개정)

이 세칙은 198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12. 20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198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2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83. 5. 11 개정)

이 세칙은 198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4. 14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5.9.10)

부 칙(1985. 9. 10 개정)

이 세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2. 18 개정)

이 세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3. 5 개정)

이 세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6. 12 개정)

이 세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6. 16 개정)

이 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부 칙(1989. 3. 31 개정)

이 세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24 개정)

이 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6. 20 개정)

이 세칙은 199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4. 10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생물학과, 교육학과의 교육학전공, 유아교육전공, 초등교육전공 및 과학교육의 수학전공 재적생은 이 세칙에 의하여 각각 생물과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및 수학교육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1992. 3. 16 개정)

이 세칙은 199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8. 19 개정)

이 세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 12 개정)

이 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25 개정)

이 세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9. 12 개정)

이 세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4 개정)

이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 30 개정)

이 세칙은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4 전문개정)

-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제10조 제2항 대상제외)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위의 학생이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학생이 1999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제2전공에 대하여서는 개정 세칙을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제2항을 적용받는 학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전공 전공교과목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에 이 개정 세칙에서 통합된 학부의 각 전공에 해당하는 학과로 입학하여 이 개정 세칙 시행 당시 제1학년에 재적중인 학생은 입학 당시 학과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7. 3. 7 개정)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 23 개정)

이 세칙은 199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5 개정)

-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제10조 제2항 대상 제외)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위의 학생이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2001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제2전공에 대하여서 이 세칙을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1997학년도 이전에 이 개정세칙에서 통합된 학부의 각 전공에 해당하는 학과로 입학하여 이 세칙 시행 당시 제1학년에 재적중인 학생은 입학 당시 학과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6. 1 개정)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8 개정)

-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2. 1998학년도 이전에 이 개정세칙에서 통합된 학부의 각 전공에 해당하는 학과로 입학하여 이 세칙 시행 당시 제1학년에 재적중인 학생은 입학 당시 학과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2. 1 개정)

-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4항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제40조 제2항은 1999학년도 후기졸업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1996년 5월 14일의 개정학칙시행세칙 부칙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학칙시행세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양필수과목 학점을 제외하고는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위의 학생이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2003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에 제2전공에 대하여는 이 세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0. 6. 20 개정)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6 개정)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1. 4. 6 개정)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24 개정)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2.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2. 2. 14 개정)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 개정)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7 개정)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0 개정)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11 개정)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20 개정)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21 개정)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30 개정)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1 개정)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4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18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9 개정)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8 개정)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4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부 칙(2006. 9. 9 개정)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11 개정)

이 세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9 개정)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8 개정)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9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 [별표 2]와 관련하여 2007학년도 예술대학 입학생의 최소전공이수 학점은 48학점으로 하되, 의류학과 입학생의 복수전공 이수시 최소전공이수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부 칙(2008. 5. 28 개정)

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19 개정)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23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 [별표 2]와 관련하여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생의 심화전공 이수 에 관한 사항은 2008학년도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입학생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1. 2. 11 개정)

이 세칙은 201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의 제적생에게는 종전 세 칙이 적용된다.

부 칙(2011. 4. 15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7조 제1항 [별표 2]와 관련하여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부에 관한 사

항은 2010학년도 건강과학대학 입학생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2. 2008학년도 이전 약학대학 입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2. 2. 29 개정)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17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35조는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31 개정)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5 개정)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0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6항 및 제7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7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 전 제3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 2015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1]은 학칙 [별표 1]과 같다.

[별표 2] 전공과목 · 전공기초과목 · 대학기초과목 및 교양과목 취득학점 (제7조 관련)

(2013학년도)

(개정 2013.2.25)

대 학	학부 · 학과 · 전공	졸업에 필요한 학점계	교양과목 학점		대학기초과목 · 전공기초과목 · 전공과목 학점					
			기초 교양	핵심 교양	심화전공 시 이수학점			(복수)전공 시 이수학점		
					대 학 기초	전공 기초	최소 전공	대 학 기초	전공 기초	최소 전공
인문과학대학	각 학 부	129	20	15	-	-	57	-	-	42
사회과학대학	각 학 부	129	20	15	-	3	45	-	3	36
자연과학대학	각 학 부	129	16-17	15	-	12	48	-	12	33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140	16-17	12	-	-	-	-	32	72
	전자공학과	139	16-17	12	-	-	-	-	31	62
	건축학전공	174	16-17	12	-	-	-	-	20	126
	건축공학전공	139	16-17	12	-	-	-	-	37	62
	환경 · 식품공학부	139	16-17	12	-	-	-	-	31	62
음악대학	음악학부	135	16-17	15	-	-	-	-	24	48
	무용과	132	16-17	15	-	-	-	-	21	48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	135	16-17	15	-	12	57	-	12	45
	디자인학부	135	16-17	15	-	18	57	-	18	45
	섬유 · 패션학부	135	16-17	15	-	12	57	-	12	45
사범대학	교육학 · 유아교육 · 사회과교육과	135	20	15	-	-	-	-	22	51
	초등교육과	135	20	15	-	-	-	-	23	57
	교육공학 · 국어교육과	135	20	15	-	22	60	-	22	51
	특수교육과	135	20	12	-	-	-	-	22	42
	영어교육과	135	20	15	-	-	-	-	22	51
	과학교육과	140	16-17	12	-	-	-	-	22	51
	수학교육과	135	16-17	15	-	-	-	-	22	51
경영대학	경영학부	129	20	15	-	3	63	-	3	48
	국제사무학과	129	20	15	-	-	63	-	-	48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136	16-17	15	-	-	-	9	11	79.5
	체육과학부	132	16-17	15	9	-	55	9	-	45
	식품영양학과	132	16-17	15	9	-	55	9	-	45
	보건관리학과	132	16-17	15	9	-	54	9	-	45
약학대학	약학과	157	3	-	-	-	-	-	-	154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	-	-	-	-	-	-	6	30
	국제학부	129	20	15	-	9	48	-	9	39

* (복수)전공 시 전공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학과(또는 전공)를 복수전공하는 주전공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학점
2. 타학과(또는 전공)생이 해당 학과(또는 전공)를 복수전공할 경우 이수해야 하는 학점

* 스크랜튼학부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계, 교양과목학점, 대학기초과목 · 전공기초 과목 · 전공과목 학점은 제1전공 학점과 동일함(단, 고전읽기와글쓰기 교과목 이수 면제). 별표 2의 스크랜튼학부 (복수)전공 시 전공 이수학점은 스크랜튼학부에서 관장하는 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할 경우 이수 해야 하는 학점임.

[별표 3] 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기준 (제38조 관련) (2013학년도)

(개정 2012.12.31.)

구 분		1학년 수료	2학년 수료	3학년 수료	4학년 수료	5학년 수료	6학년 수료
학 점 취 득 기 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스크랜튼대학 국제학부	32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129학점 이상	-	-
	공과대학(컴퓨터공학과, 건축학전공 제외)	34학점 이상	69학점 이상	104학점 이상	139학점 이상	-	-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34학점 이상	69학점 이상	104학점 이상	139학점 이상	174학점 이상	-
	음악대학 음악학부	33학점 이상	67학점 이상	101학점 이상	135학점 이상	-	-
	음악대학 무용과	33학점 이상	66학점 이상	99학점 이상	132학점 이상	-	-
	조형예술대학	33학점 이상	67학점 이상	101학점 이상	135학점 이상	-	-
	사범대학(과학교육과 제외)	33학점 이상	67학점 이상	101학점 이상	135학점 이상	-	-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	-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제외)	33학점 이상	66학점 이상	99학점 이상	132학점 이상	-	-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34학점 이상	68학점 이상	102학점 이상	136학점 이상	-	-
	약학대학	-	-	39학점 이상	78학점 이상	117학점 이상	157학점 이상
이수학기기준		2학기 이상	4학기 이상	6학기 이상	8학기 이상	10학기 이상	12학기 이상

* 스크랜튼학부 학생의 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기준은 제1전공의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서식 제1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 학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 ○ 대 학 학장 ○ ○ ○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이화여자대학교 총 장 ○ ○ ○ (인)